

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지정

- 1.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- 2.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고시 관련 문의는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세운활성화추진단(☎ 731-1904~1910, 1154)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7년 9월 14일

종로구청장

가.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고시

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가) 종 류 : 재정비촉진사업(도시환경정비사업)
 - 나) 명 칭 :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
2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구 분	성 명	주 소
기 정	종로구청장 김충용	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길 50(수송동 146-2)
변 경	SH공사 사장 최령	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(개포동 14-5)

3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 분	위 치	면 적
기 정	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	33,190.1㎡
변 경	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	33,262.9㎡

4)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구 분	착수예정일	준공예정일
기 정	2004년 6월 1일	2009년 5월 30일
변 경	2004년 6월 1일	2012년 12월 31일

나.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사유

2004년 5월 25일 종로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고 전문인력과 조직 및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겸비한 공기업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고자 함.